

보도자료1
(요약본)

이 자료는 2022년 1월 6일(목) 15:00 보도부터
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

2022. 1. 6.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I.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	1
II. 주요 개정내용	2
1. 선도형 경제 전환 / 경제회복 지원	
1)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	2
2) 일자리 회복 지원	5
3)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	6
2. 포용성 및 상생·공정기반 강화	
1) 상생협력기반 강화	8
2) 서민·취약계층 지원	9
3) 과세형평 제고	13
3. 안정적 세입기반 /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	
1) 과세기반 정비	14
2)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	16
3) 조세제도 합리화	17
<참고> 시행령 개정안 세수효과	20
III. 추진 일정	21

〈 기본 방향 〉

- ◇ '21년 정기국회 통과 세법 시행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
- ◇ '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

1.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

-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
- 지식재산(IP)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
-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
-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
-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

2. 포용성 및 상생·공정기반 강화

-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
- 근로·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
-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
-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·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-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
-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
-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
-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·강제징수 유예 확대

3.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- 명의위장 사업자 및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
-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
-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
- 상속주택,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,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
-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
-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
-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·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

Ⅱ. 주요 개정내용

1 선도형 경제 전환 / 경제회복 지원

1)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
①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규정

< 법률(조특법§10·§24) 개정내용 >

◇ 반도체·배터리·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&D·시설투자 지원 강화

① R&D 비용(%)	대	중견	중소	② 시설투자(%)	당기분			증가분
					대	중견	중소	
일반	2	8	25	일반	1	3	10	3
신성장원천기술	20~30		30~40	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	3	5	12	
국가전략기술	30~40		40~50	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	6	8	16	

·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,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

□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(조특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분야	구분	기술
반도체	메모리	-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·제조기술 - 차세대 메모리반도체(STT-MRAM, PRAM, ReRAM) 제조기술
	시스템	-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(7나노미터 이하) 기술 - 차량용·에너지효율향상·전력반도체·DDI칩 설계·제조기술 등
	소재·부품·장비	- 반도체용(15nm이하 D램, 170단이상 낸드 등) 웨이퍼 개발·제조기술 - 첨단·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·장비·장비부품 설계·제조기술 등
배터리	상용배터리	- 고에너지밀도·고출력·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-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
	차세대 이차전지	-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
	소재·부품	- 고용량 양극재(니켈함량 80%이상), 장수명 음극재(충방전 1,000회 이상) 제조 기술 -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·전해액 제조 기술 등
백신	개발·생산	- 항원, 핵산,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
	시험	- 세포·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-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·2상·3상 시험 기술
	원·부자재	- 백신 개발·제조에 필요한 원료·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·제조기술 - 백신 및 백신 원료·원부자재 장비 개발·제조기술

※ 전체 국가전략기술은 보도자료 상세본 참고

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(조특령)

-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*로서 신성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·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
* 3대분야 총 31개 시설 既 발표 (반도체 19 / 이차전지 9 / 백신 3)

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*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(조특령)

* 공제율(%): <국가전략> 대 6/ 중견 8 / 중소 16 <일반> 대 1 / 중견 3 / 중소 10

-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*,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**

* (예) 국가전략기술제품(예: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)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(예: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)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

→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

**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

- 다만,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 되는지 여부 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(3년+α)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% 미달시 공제세액(+이자상당액) 납부

※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

① (대상)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

② (기간)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

* (예) '21.9.15. 시설투자 완료시 : '21.9.15.~'24.12.31.

③ (생산비중)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%(주된 용도 판정기준)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

④ (납부세액) 공제율 차액[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- 일반시설 공제세액] + 이자상당액

② 신성장기술 R&D 및 지식재산(IP) 취득 세제지원 강화

□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* 범위 확대 (조특령)

* 일반 R&D(중소 25%, 중견 8~15%, 대기업 0~2%)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(중소 30~40%, 중견·대기업 20~30%) 적용

○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(12 → 13개)하고 신규기술 추가(235 → 260개)*

*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+ 미래유망 기술(미래차·자원순환·바이오 등),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(요소수 등)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

- (탄소중립 기술) CCUS, 수소, 신재생에너지, 산업공정, 에너지효율·수송 등 분야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

* (탄소중립 분야 : 총 48개 기술) 19개 신설 + 29개 기존기술(4개 범위 확대)

구분	주요 기술
CCUS	연소 전·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, 이산화탄소 수송·저장 기술(확대) 등
수소	그린·블루수소 생산기술(신설), 수소저장 기술(신설),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(신설) 등
신재생E	연료전지 시스템 기술(확대),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(확대) 등
산업공정	수소환원제철 기술(신설),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(신설) 등
E효율·수송	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,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(신설) 등

- (미래유망 기술) 미래차, 에너지·환경(오염방지·자원순환), 바이오·헬스(바이오 의약품 등) 분야 주요 기술

*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,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, 바이오의약품 부품·장비 기술,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

- (공급망 대응 기술) 희토류·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&D·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·핵심품목 관련 기술

*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,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

- (제외) 상용화,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

*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,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

□ 중소·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* 적용 (조특령)

*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%, 중견 3%, 대기업 1% 및 증가분 3% 세액공제 적용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내국인(특수관계인 제외)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*을 공제대상 투자자산**에 추가

*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(위탁·공동연구 포함)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

** (현행) 사업용 유형자산(건물·차량 등 제외)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

2) 일자리 회복 지원

□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특례 확대 (조특령)

※ 「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」에서 既 발표('21.8.26.)

-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「벤처기업법」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* 허용

*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

□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·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(부가령)

※ 「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」에서 일부 既 발표('21.8.26.)

- 창업기획자, 유한(책임)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·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

* (현행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

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12의4) 개정내용 >

- 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의 요건을 '1회 50% 초과 취득'에서 '동일 사업연도 내 50% 초과 취득'으로 완화

▶ 지분율 요건 판단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- (지분율 요건* 판단시점)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

* 지분율 50%(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%) 초과 취득

- (특수관계인 여부* 판단시점)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주식 취득일

* 지분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

- (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) 취득일별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

3)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

□ 기업상속공제*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(상증령)

* 기업상속재산의 100%를 상속재산에서 공제(한도 :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~500억원)

-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기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

* (현행) 피상속인이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

< 대분류·중분류 예시 >

대분류	제조업		
중분류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

- 기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

※ 「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」에서 既 발표('21.3.10.)

□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(조특령)

-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

※ (현행) 관광호텔업, 식·음료제조업 등 26개 업종

(개정안) 신규화장품제조업, 분야확대 첨단산업·연구개발업, 입지제한 삭제 식·음료제조업

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(Reshoring) 세액감면제도* 실효성 제고 (조특령)

* 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·법인세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(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②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% 부분복귀 시 50% 관세 감면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해외사업장을 양도·축소·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

□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* 확대 (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)

*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(부가세·개소세)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

※ 「'22년 경제정책방향」('21.12.20.)에서 既 발표

-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

□ **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연장** (소득령)

- 단일세율(19%) 과세특례*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 이익에 대한 과세유예** 기간을 '23년까지 2년 연장

* 비과세·공제·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19%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

** 사택제공이익을 과세제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개정(21.2월)함에 따라 사택제공 이익이 단일세율 적용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, 다만 '21.12.31.까지 과세유예

□ **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규제 합리화** (주세령·주류면허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신기술 활용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시 기존 주류제조 시설 기준 중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미적용

* (예시)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·저장용기 등 시설기준 미적용

-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 기준 합리화

※ (현행) 과실첨가량이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20% 초과 금지(①)

(개정안) ① 또는 '발아된 맥류 중량의 50% 초과금지(②)'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

□ **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** (개소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42원/kg에서 8.4원/kg으로 인하

※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

- (현행) [열병합 발전용] 8.4원/kg, [산업용] 42원/kg

- (개정안) [열병합 발전용] 8.4원/kg, [수소제조용] 8.4원/kg, [산업용] 42원/kg

2

포용성 및 상생·공정기반 강화

1) 상생협력기반 강화

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(법인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**우리사주매수선택권**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**행사차액(시가 - 행사가액)**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

* (현행) 「상법」, 「벤처기업법」, 「소재부품장비산업법」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만 손금 인정

□ 공익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(소득령)

- 자체재원조달 요건(개인 기부 비중 50% 이상)을 **완화**하여 **공익활동 활성화 지원**

- 개인 기부 비중 산정 시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다른 공익법인·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추가

* (현행) 국가·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만 제외

- 공익단체가 **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제출이행을 요구**하고, **미이행 시 지정 취소**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□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(소득령)

※ 「'22년 경제정책방향」에서 既 발표('21.12.20.)

-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(2년) 산정시 상생임대주택(①~③ 모두 충족)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

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% 이내 인상 + 2년 이상 임대

* '21.12.20~'22.12.31.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

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

③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 +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

2)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①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선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* 합리화 (조특령)

*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

○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을 인하*하고, 3개 업종**은 인상

* 예시 : (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매업) 30 → 25%, (제조업, 음식점업) 45 → 40%

** 부동산매매업, 고급·유흥주점업, 금융업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(조특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,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

* 근로·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(부동산, 예금 등)을 합산

-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하여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

□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(조특령)

○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, 월 평균 급여액(일용근로소득 제외)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② 근로자·자영업자 지원

□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·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(소득령)

< 법률(소득법 §59의4②) 개정내용 >

- ◇ 의료비(공제율 15%) 중 **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**
 - ▶ (20%)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
 - ▶ (30%)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

-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**미숙아¹⁾·선천성이상아²⁾·난임시술³⁾**에 대한 **의료비 정의를 신설**

- * 1) 미숙아 :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
- 2)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: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
- 3) 난임시술비 : 「모자보건법」§2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

□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(조특령)

- * (지원대상) 1가구 1경차 보유자
(지원내용) 휘발유·경유는 250원/ℓ,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(161원/ℓ) 환급
- 중산서민층, 자영업자 등의 **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**

□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부가령)

- 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- **가사·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*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**
- * 「가사근로자법」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

□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* 적용기한 연장 (부가령)

- * 면세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액의 일정률(2/102~9/109)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
- 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- **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 한도 특례* 적용기한을 '23년 말까지 2년 연장**
- * (기본 공제한도) 매출액의 30~50%, (특례) 매출액의 40~65%

③ 중소기업·고령자·농어민 등 지원

세금납부·강제징수를 유예*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 확대 (조특령)

*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·매각 유예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중소기업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·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

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·어업용 기자재 추가 (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)

- 농어민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배추망, 양배추망, 구멍뎛목·부환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

④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

□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(소득령·부가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(공급가액)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

* (현행) 개인사업자의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(공급가액) 3억원 이상('22.7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)

※ (적용시기) '23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신설 (소득령·부가령)

— < 법률(부가법 §47 및 소득법 §56조의3) 개정내용 > —

- ◇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
 - 대상 사업자,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

- (대상 사업자)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(공급가액)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
- (공제금액) 발급 건당 200원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(소득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* 대상업종에 추가

*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
- (현행) 병·의원, 교습학원,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

※ (적용시기) '23.1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3) 과세형평 제고

□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(소득령)

< 법률(소득세법§89) 개정내용 >

◇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(고가주택 기준) 상향(실지거래가액 9억원 → 12억원)

-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

구분	현행	개정안
양도차익	양도차익 × $\frac{(\text{양도가액} - 9\text{억원})}{\text{양도가액}}$	양도차익 × $\frac{(\text{양도가액} - 12\text{억원})}{\text{양도가액}}$
장기보유특별공제액	장특공제액 × $\frac{(\text{양도가액} - 9\text{억원})}{\text{양도가액}}$	장특공제액 × $\frac{(\text{양도가액} - 12\text{억원})}{\text{양도가액}}$

※ (적용시기) '21.12.8.(법률 공포일)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양도세 보유·거주기간 특례*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 확대 (소득령)

* 공공건설임대주택,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,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·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

-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·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

* (현행) 공공건설임대주택,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

□ 성실신고 확인* 대상 법인 범위 확대 (법인령)

*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
- (대상 요건: ①+②+③) ①지배주주등이 50%를 초과하여 출자,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% 이상,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의 비중을 70% 이상에서 50%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

□ 자연장*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(부가령)

* 자연장(自然葬) :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

- 장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

* (현행) 장사시설업자가 제공하는 화장,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

1) 과세기반 정비

□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 (법인령·부가령)

○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신설

< 법률(법인법§94의2) 개정내용 >

- ◇ 외국법인 연락사무소(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)는 **현황자료를 매년 2.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**
 ▸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,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

- (비영업적 기능) 업무연락, 시장조사, 연구개발 활동, 정보수집 등
- (현황자료) 연락사무소 소재지, 대표자 등 기본현황, 직원현황, 운영자금 현황,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

○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-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*

* (적용시기) '22.7.1.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신설 (부가령)

< 법률(부가법§53의2) 개정내용 >

- ◇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**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신설**

- (거래명세) 전자적 용역의 종류,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, 용역제공일자, 공급받는 자,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

□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(국조령)

* 국제거래명세서, 개별·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제출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(1억원 한도) 감경기준 신설

- 기한 후·보완 제출 시기에 따라 30~90% 과태료 경감

□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 (국기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

□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(관세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○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~15%에서 5~20%로 상향조정

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* 지급요건·절차 보완 (국기령)

* 부과처분 불복 등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既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가 곤란(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절차 필요)

○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을 지급요건에 추가하고,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보자 편의 제고

2)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

□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(국기령·관세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0.019~0.022% 범위로 既 발표('21.7.26.)

-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0.025%에서 1일 0.022%로 인하

* 연이율 환산 : (현행) 연 9.125% → (개정안) 연 8.03%

□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(법인령)

- '18.2.13.전에 인·허가 받은 장학단체 등*이 '22.3.31.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되는 경우 '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

* ①'18.2.13.전에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·예술·환경단체 및
②'18.2.13.전에 舊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

** (현행) '21.12.31.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되어야 '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

□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(부가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- (기간요건 완화) 세금계산서가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

구분	현행	개정안
선발급	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	30일 → 6개월
지연발급	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	6개월 → 1년

- (직접위탁 착오 시 공제 허용)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·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했다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

* (현행) 재화의 직접/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

- (수정기한 확대)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로 확대

* (현행)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

3) 조세제도 합리화

□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(종부령)

-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*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(다만, 과세표준에는 합산)

* 수도권·특별자치시(읍·면지역 제외), 광역시(군지역 제외) 외 지역

□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(종부령)

-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**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***, 종종 추가

* 기본공제액 6억원, 누진세율(0.6~3.0%, 1.2~6.0%), 세부담상한(150%, 300%) 적용

** (현행) 공공주택사업자, 공익법인, 주택조합,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, 민간건설임대사업자

***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,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

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추가 (종부령)
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(비과세)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*의 멸실 예정 주택**, 시·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 추가

* 주택건설사업자, 공공주택사업자, 재개발·재건축 사업시행자, 주택조합 등

**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

□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가 (소득령)

-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,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

□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(법인령)

- 기부금 영수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

※ (특례)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배제

□ **세무조정반 제도* 합리화** (소득령·법인령)

*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(예: 제조업 3억원)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

- 기존 세무법인, 회계법인,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*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

* 「변호사법」에 규정된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

□ **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* 기준 명확화** (소득령)

*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비용 100%를 필요경비로 인정

-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

□ **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** (상증령)

< 법률(상증법§50) 개정내용 >

◇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('19년 개정, '22년부터 시행)

- ▶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

- (대상 공익법인) 자산규모 1,000억원 이상* 공익법인

* (판단기준일) 해당 지정 사업연도의 전전년도('22년의 경우 '20년 자산규모 기준)

※ '22년도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(자산 1,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, 6년간 지정)

- (감사인) 국세청에 사전 등록*한 회계법인

* (등록요건) 공익법인 감사실적 보유 또는 소속 회계사 3인 이상 감사실무교육 이수

- (절차)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.1일(1.1.~12.31. 회계연도 법인 기준)부터 절차 개시 → 자료제출,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

* 공익법인의 감사계약 관행(상반기 계약 추진)을 고려하여, 시행 사업연도('22년)는 '22.3.1.에 절차 개시하여 '22년 5월 중 지정 통지

□ **토지·건물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신설** (부가령)

※ 「'21년 세법개정안」에서 既 발표('21.7.26.)

< 법률(부가법§29⑨) 개정내용 >

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·건물 가액을 인정할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법* 미적용

*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%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

- (예외사유)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, ②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

□ **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·고용요건 규정** (조특령)

< 법률(조특법§63의2) 개정내용 >

- ◇ **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·고용 요건 신설**
· 구체적 투자·고용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

-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본사에 대한 최소 투자·고용 기준 규정
- **(최소 투자·고용 기준)**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+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

□ **탁주·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 및 세율 변경** (주세령)

-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(매분기말)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을 4.1.~ 다음 연도 3.31.로 조정

* (현행) 당해 3.1.~ 다음 연도 2월말

- '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(2.5%)을 반영하여 탁주·맥주에 대한 '22년도 종량세율 확정·공시

- **(맥주)** 1ℓ 당 855.2원(20.8원↑), **(탁주)** 1ℓ 당 42.9원(1.0원↑)

※ 주세법 §8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세율 =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× (1 + 「통계법」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)

□ **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** (국기령)

- 조세정책 평가·연구 목적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대상도 확대

* 절차 : '국세청장의 지정 필요' 요건 삭제

대상 : (현행) 일반대학 등 → (개정안) 교육·산업·전문·원격·기술대학 등 추가

참 고**시행령 개정안(신규) 세수효과 : △2,500억원**

* 동 세수효과는 '21년 세법개정안('21.7.26. 발표)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한 수치임

(단위: 억원)

주요 항목	세수효과
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	△1,600
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	△900
합 계	△2,500

Ⅲ. 추진 일정

1 개정대상 시행령 : 총 21개

□ 내국세(18개)

-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소득세법·법인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·종합부동산세법·부가가치세법·개별소비세법·주세법·교통에너지환경세법·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·증권거래세법·농어촌특별세법·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·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,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

□ 관세(3개)

- 관세법·관세사법·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 추진일정

- '22.1.6.(목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- '22.1.7.(금)~1.20.(목), 입법예고
- '22.2.8.(화), 국무회의
- '22.2.9.(수)~2.15.(화), 공포